

한국콘텐츠진흥원 · 지스타조직위원회

지스타 2017 중소기업 공동관 구축 및 운영

업무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 라 한다)과 지스타조직위원회(이하 ‘지스타 조직위’ 라 한다)는 지스타 2017 중소기업 공동관(이하 ‘중소기업 공동관’ 이라 한다)운영에 있어서 상호 공동 협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KOCCA’ 와 ‘지스타조직위’ 가 상호 협력 하여 ‘중소기업 공동관’ 을 운영함으로써 국내 게임산업 역량강화 및 국산게임 수출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내용)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한다.

1. ‘지스타조직위’ 는 아래 사항을 제공한다.
 - ‘중소기업 공동관’
 - BTB 공동관 : 독립 44부스(396sqm)
 - 중소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BTB 출입증 100매 제공
2. ‘KOCCA’ 는 ‘지스타조직위’ 가 제공한 전시면적에 ‘중소기업 공동관’ 을 설치하고, 참가기업 모집 및 운영 일체를 수행한다.
3. ‘KOCCA’ 는 양 기관의 CI와 BI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공동관’ 내외 부에 양 기관 CI와 BI가 적절하게 노출되도록 한다.
4.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 홍보를 추진한다.
5. ‘KOCCA’ 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주관 행사에서 ‘지스타’ 의 홍보를 적극 지원한다.
6. 기타 협력 및 지원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양 기관이 별도로 합의한다.

제3조(비밀유지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협약 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5조(협약 해지)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협약 해지의 발효는 서면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후로 한다. 단, 제3호 혹은 제4호의 경우 즉시 해지효과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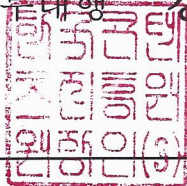
1. 본 협약의 책임사항 및 의무 이행을 현저히 태만하거나 지연하여 협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일방이 상대방을 부당히 비방하거나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양사 정책 또는 환경의 변화 기타 천재지변 등 본 협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또한 본 협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스타조직위' 소재 관할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 날인하여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10월 10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 강신철

